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767
------------	------

2024년 4월 30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이종배 의원 외 9명

나. 제안일자 : 2024년 4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라.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4년 4월 3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종배 의원)

가. 제안이유

-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

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 있어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던 만큼 향후 통행료 지원대상에 관련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규정함(안 제6조제11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정비 촉진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4.12. ~ 2024.4.16.
- 제출의견 : 의견없음

## 라.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sup>1)</sup>

### ○ 서울시장(교통정책과): 원안가결

-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남산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동의함

---

1) 교통정책과-7109('24.4.18.) “제323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감면 대상에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유효한 ‘다둥이 행복카드’ 등 그 자격이 확인된 차량)’를 포함하여 다자녀가구 혜택 기준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23년 통계청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sup>2)</su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sup>3)</sup>은 약 0.72명으로 전년 대비 0.06명 감소하였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1명 이하인 유일한 국가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약 0.55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상황임
-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sup>4)</sup>을 통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거·교육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21년 다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sup>5)</sup>한 데 이어 지난

2)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통계청(‘24.2.28.)

3) 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20.12.15.)

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방안(‘21.9.15.)

8월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sup>6)</sup>을 통해 양육·교육·주거 관련 지원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sup>7)</sup> 및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sup>8)</sup>에서 이미 ‘다자녀 가족’의 정의를 2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자녀에 대한 혜택 확대를 통해 저출산 극복 해결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이해된다고 할 것임
  
- 다만, 동 조례에서는 혼잡통행료 감면 시 현장에서 ‘다둥이 행복카드’<sup>9)</sup> 등 다자녀 가족이 확인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현장에서는 다자녀 가족 확인에 따른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 및 교육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임

---

6)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안)’-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23.8.16.)

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 “다자녀 가족”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8)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9) 서울시 다자녀가족 지원(다둥이행복카드)

- 발급대상: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막내자녀 18세 이하)
- 발급조건: 신청당시, 부 또는 모 한명과 자녀들이 서울시에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을 두어야 하며 서울시 내에서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를 달리할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카드종류: 신용, 체크, 신분 확인용 카드(앱카드)
- 유효기간: 발급대상기준에 부합할 경우, 다둥이행복카드 할인 효력이 발생합니다.(유효기간 카드 뒷면 표시)
- 다둥이혜택을 드리는 기관등에서는 다둥이행복카드 외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현재 혼잡통행료 전체 면제 비율이 61.7%<sup>10)</sup>인 상황에서 '22년 기준 서울시 전체 가구(756,376) 중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53.8%(407,083)<sup>11)</sup>로 이 중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족 차량을 감면할 경우 혼잡통행료 세입<sup>12)</sup>은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나 국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해된다고 할 것임

10) 서울시 제출자료-혼잡통행료 징수·감면·면제차량 현황('23.12.기준)

'23.12.기준, 단위: 천대)

전체	승용								승합	택시	버스	화물
	일반	감면	면제									
		경차	3인 이상	경차 승합/벤	장애인	1,2종 저공해	긴급/공무/보도	외교/의진				
15,772 (100%)	5,802 (36.8%)	238 (1.5%)	684 (4.3%)	31 (0.2%)	893 (5.7%)	1,695 (10.7%)	681 (4.3%)	87 (0.6%)	191 (1.2%)	3,088 (19.6%)	1,363 (8.6%)	1,019 (6.5%)
(승용차 내비율)	(57.4%)	(2.4%)	(6.7%)	(0.3%)	(8.8%)	(16.8%)	(6.7%)	(0.9%)				
'23년 (승용차)	징수(59.8%) (일반 57.4% / 감면 2.4%)		면제(40.2%)									
'23년 (전체)	징수(38.3%) (일반 36.8% / 감면 1.5%)		면제(61.7%) (승용차 25.32% / 승용차 외 36.4%)									

11) 「인구총조사」, 통계청 “미성년자가 있는 자녀수별 가구”

- 주1) 한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만18세이하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구를 집계 대상으로 하며, 부모가 서로 다른 2가족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자녀수의 최대값으로 그 가구의 자녀수를 결정
- 주2) 집계대상은 만18세이하 미성년자가 있는 가구이며 자녀수(2자녀~5자녀이상)에는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자녀도 포함됨

계(가구)	2022년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이상
	46.17%		53.8%		
756,376	349,293	350,237	52,362	3,957	527

12) 서울시 제출자료-혼잡통행료 징수현황('23.12.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징수액	15,572	15,238	14,262	12,146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767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4월 03일

발 의 자: 이종배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재진, 문성호,  
박춘선, 신동원, 유정인,  
이병운, 이종태, 최윤희,  
최진혁, 최호정 의원(11  
명)

## 1. 제안이유

- 국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 사회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교통·문화시설 이용, 양육 교육 지원 등의 사업에 반영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감면 대상에 있어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내용이 부재했던 만큼 향후 통행료 지원대상에 관련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혼잡통행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규정함(안 제6조제11호 신설).

## 3. 참고사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유효한 「다둥이 행복카드」 등 그 자격이 확인된 차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 (혼잡통행료의 감면) 제5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 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1. ~ 10.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6조 (혼잡통행료의 감면) ----- -----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 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 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유효 한 「다둥이행복카드」 등 그 자 격이 확인된 차량)</u></p>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혼잡통행료의 감면)제11호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세입이 감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혼잡통행료의 감면)제11호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 세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서울시 도시교통실 담당부서 문의 결과 현재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통계가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계분석관	김 지 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